

부패라운드와 부패에 대한 한국 기업인의 인지도 조사

조 은 경*

국제적으로 국가간의 거래가 활발해지고 자본이동이 자유화되면서 부패문제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부패로 인한 윤리적·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OECD 부패방지협약이라는 국제규칙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방지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후속 및 이행조치를 검토하고,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인지도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국제적 상황에 대처하고 기업부문에서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그에 대한 대응조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기업문화 역시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기업인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문화의 인위적 변화 가능성은 의문의 여지로 남는다.

I. 서 론

세계는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에 있다. OECD를 비롯한 UN, WTO, World Bank, EU, IMF, IBRD, ICC(International Commerce Conference) 등에서도 부패 방지를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해외뇌물을 비롯한 부패행위가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부패가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많은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OECD에서는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뇌물 규모가 연간 8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타임스지의 보도에 의하면 국제뇌물의 규모가 지난 96년 연간 1,670억 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감춰진 뇌물을 감안하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시아 국가에서도 부패는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필리핀의 헌법기관인 옴부즈만실의 발표에 따르면 과

*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선임연구원

거 20년간 부패로 인해 필리핀 정부가 낭비한 금액이 480억 달러나 되며, 감사원(COA)은 부패로 인해 필리핀이 매년 4,450만 달러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필리핀 국가예산의 최고 20%에 해당한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일수 없어서 대표적인 부패기업인 한보 청산에 9조원 이상을 낭비하는 등 부실기업을 청산하는데만 무려 64조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낭비되었고, 향후 최소한 40조 이상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뇌물은 또한 건전한 경쟁을 저해하여 올바른 사회윤리와 공정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가로막는다. 뇌물관련자의 개인 이익은 증가하지만 납세자와 소비자 등 일반대중에게 비용이 전가되어 그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부패에 의한 제한적 경쟁은 거래비용 등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발하고 국제무역과 투자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대 추구(rent seeking) 등 정치적 투자와 왜곡된 소득분배로 인한 시장붕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경쟁(tax competition)과 마찬가지로 ‘뇌물전쟁’은 비효율적이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뇌물 등의 부패에 대한 논의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지를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향을 한국 기업인의 부패 인식도 조사를 통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부패라운드 의미 및 동향

1. 부패라운드의 의미와 제정과정

부패라운드(Corruption Round)란 국제무역에 있어서 부패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규칙의 마련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의미한다. 개별국가 차원의 문제로만 인식되었던 부패문제가 최근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 논의된 배경은 부패관행이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을 잠먹고, 만연된 국제적 뇌물수수 관행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국제무역 및 투자의 증진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1989년 OECD 차원에서 국제적 뇌물수수 관행 퇴치를 위한 국제규범을 마련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따라 OECD 이사회는 1994년 5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뇌물을 방지하는 권고안을 채택, 1994년 10월 5일 그 작업단을 국제투자 및 다국적 기업위원회(CIME)에 설치하면서 뇌물방지를 위한 최초의 합의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7년 7월 7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사무국에서 독일, 프랑스, 미국에서 제출한 3개 협약초안을 근거로 각국의 입장을 정리하는 1차 협상을 개시하고, 1997년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제1차 협상시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각국 입장을 재정리하고 미합의 사항을 집중 토론하는 2차 협상을 가지게 된다. 한국은 2차 협상 이후 종전의 소극적 입장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협약을 가급적 수용한다는 입장에서 협상에 적극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 1997년 11월 8일부터 20일

까지 고위급 정책결정자들이 참석하여 협상안이 최종적으로 타결되고, 1997년 12월 17일 33 개국 정부대표들이 참석하여(한국도 참여) 협약에 서명¹⁾함으로써 OECD 부패방지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법무부·전국경제인연합회, 1999). 협약은 비준서의 기탁일로부터 6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휘하는데, 한국을 비롯한 11개국은 1999년 2월 15일부터 발효하였다.

OECD 부패방지협약은 이런 과정을 거쳐 체결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 뇌물제공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을 말하는 것으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공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서명한 각국은 협약에 필요한 입법조치를 1998년 말까지 완료하기로 하였고, 우리나라도 1998년 12월 28일 「국제상거래에있어서 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법률 제5588호)을 제정·공포하였다.

2. 부패방지협약의 구성

부패방지협약에 대한 논의는 협약문, 후속 및 이행조치, 이와 관련된 보완조치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협약문은 전문, 조문,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에서는 부패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사회·경제적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부패방지협약의 기본 정신과 목적을 제시한다. 조문에서는 협약의 실제 규제내용을 17개의 개별조항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주석은 협약문에 나타난 어휘와 구절을 설명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3. 부패방지협약의 내용

1) 뇌물공여죄의 정의와 대상

OECD 부패방지협약은 뇌물공여 즉 능동적(active) 뇌물제공 행위를 처벌하며, 수동적(passive) 뇌물수수행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또한 뇌물을 제공한 행위는 그 자체가 범법행위로 각국은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패방지협약은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뇌물행위를 처벌하는데, 외국 공무원은 선출직과 임명직을 막론하고 중앙 및 각종 지방정부 차원에서 봉사하는 입법, 사법, 행정직 공무원을 뜻하며 동시에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국가를 위하여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와 국제공공기구의 관리 또는 대리인도 외국 공무원의 범주에 포함된다. 정당인의 포함 여부는 상황에 따라 각국이 결정한다.

1) 1997년 12월 17일 협약서명국은 호주를 제외한 28개 OECD 회원국 및 5개 옵저버 국가로,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한국, 덴마크, 스페인, 미국, 프랑스,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뉴질랜드,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체코, 영국, 스웨덴, 스위스, 터키(이상 OECD 회원국),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칠레, 슬로바키아, 브라질(이상 옵저버국)이다. 국내사정을 이유로 위 서명식에 불참하였던 호주는 그 후 협약에 서명하였다.

2) 제재조치와 법인의 의무

자연인에 대한 처벌 수준은 실질적이고도 균형 잡힌 그리고 재발방지가 가능한 정도의 형사처벌이어야 하며, 자국내 공직자 뇌물수수에 필적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특히 자연인인 경우 효과적인 상호 법률지원과 범죄인인도가 가능한 수준에서 자유가 박탈되어야 한다. 금전상으로는 제공된 뇌물 및 뇌물공여로 인하여 얻은 수익 또는 이에 상당한 자산을 압류 및 몰수하는 제재조치나 이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하는 금전상의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 법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당사국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금전상 제재 등의 비형사적 처벌을 가해야 한다.

3) 관할권과 범죄인인도

뇌물공여 행위에 대한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가 동시에 적용된다.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는 당사국들의 법률이나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협약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

뇌물공여행위를 수사 및 기소함에 있어 각 당사국의 관련 규정과 원칙이 준수되는 기소의 자주권을 인정하지만 기소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소의 결정권은 전문성을 근거로 행사되고 정치적 영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OECD 협약상의 뇌물공여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사법공조가 가능하다. 법률지원을 요청받은 국가는 지체하지 말고 지원요청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해당국에 통보하고 요구하면 그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어떤 당사국도 은행기밀 보호를 구실로 이 협약의 범주내에 속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사법공조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비형사사건은 제외된다.

5) 1997년 수정 권고안

1997년 5월 23일 효과적인 뇌물방지과 적발을 위한 전제 조건은 정상적인 회계제도의 도입에 있다고 간주하고 이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였다. 이 중에서 적절한 회계기준의 요건, 독립적 외부감사, 기업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권장한다. 특히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WTO에서 현재 검토중인 정부조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협정을 지지해야 하며,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도 국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법률을 위반한 기업과 상응하게 정부조달에 대한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의 개정을 권고한다.

6) 1996년 수정 권고안

1996년 4월 11일 간접적으로 뇌물공여행위를 조장하는 조세상의 규제조치를 억제하기 위

한 한 장치로서 각 당사국이 외국 공무원에게 제공된 뇌물의 손금 불산입을 권고하고 있다.

7) 이행조치의 감독

협약의 이행조치에 대한 심사는 정기적으로 단계별로 수행한다. 심사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질문서 답변에 근거한 자기 평가와 함께 이행조치의 진척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업반이 수행하는 상호 평가로 이루어진다.

8) 개정 및 탈퇴

모든 당사국은 이 협약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는데, 당사국의 만장일치 또는 만장일치로 결정한 기타 방법에 따라 채택된다. 또한 당사국은 OECD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동 협약에서의 탈퇴를 통보할 수 있으며, 탈퇴는 접수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하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당사국이 요청한 상호지원이나 범죄인의 추방 요청은 계속 유효하다.

4. 부패방지협약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와 이행평가

1) 후속조치

1999년 5월 협약의 보완을 위한 후속조치로 5대 쟁점사항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5대 쟁점사항은 ① 정당인에 대한 제재조치 ② 공직후보자에 대한 제재조치 ③ 해외 자회사에 대한 통제 ④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연계 ⑤ 역외금융센터의 역할이다.

2) 이행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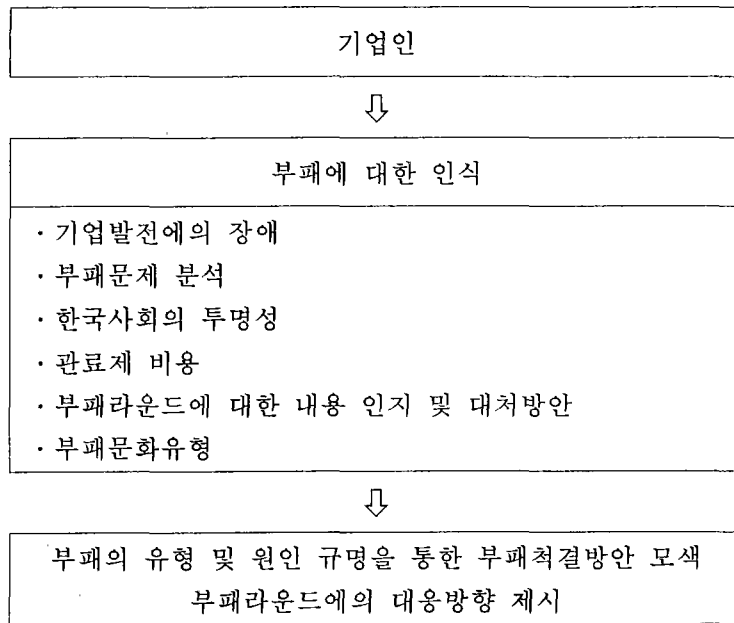
실무작업반은 협약의 완전한 이행을 감독 및 촉진하기 위하여 이행조치를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이행조치가 제대로 도입 및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가별로 평가되고 이행조치와 관련된 개선책이 제안될 수도 있다.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특정 국가의 자기 평가와 자기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동료집단(peer group)의 평가인 상호평가가 수행된다. 1999년 6월 28일 한국은 자기 평가 및 OECD에 의한 상호 평가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한국의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이 단순 명료하지만 형법과 대법원 등 판례법에서 뇌물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고 법원이 뇌물행위와 법에 대하여 탄력적이고도 포괄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주장하였다. OECD에서는 해외뇌물거래방지법이 협약의 요건에 대체로 부합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OECD 부패방지협약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으로 간주하며 이를 엄정하게 해석할 것이라는 입장에 감사를 표하고,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였다.

Ⅲ. 부패에 대한 한국 기업인의 인식

1. 부패에 대한 한국 기업인의 인지도 조사배경

부패는 기업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를 주는 관행이라는 인식의 확산으로 부패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패라운드에 대해 한국 기업인들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처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기업활동을 하면서 기업인들이 느끼는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를 조사하고, 한국 기업인의 부패문화 유형을 파악하여 한국 사회의 부패유형과 원인을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기업부문에 있어서 부패척결의 방안과 부패라운드에 대응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한국 기업인의 부패인지도 조사배경



2. 조사개요

설문조사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기업인을 대상으로 부패에 관한 조사로 제시한 설문 문항과 부패라운드에 대한 인지 여부, 그리고 한국 기업인의 부패문화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은 「전국기업체총람」 목록을 활용하여 무작위 원칙에 의거하여 표본을 추출하였고, 서울에 위치한 기업으로 한정하였고, 응답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임원급 대상의 조사는 기업방문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H 대학과 S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은 크게 7분야로 구성되었다. 6개 분야는 설문 목적과 관련되어 총 58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한 분야가 첨가되었다. 설문지는 직접 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Face-to-face Interview) 및 자기기입식(Self-administrative) 방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전화요청에 의한 Fax 회수도 병행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150부이고, 회수된 설문지는 120부이며 부실한 응답을 제외한 10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조사는 2000년 10월 6일부터 10월 24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다.

<표 3-1> 표본구성의 특성

구분	사례수 (%)
성별	남자 85 (78.7)
	여자 22 (20.4)
연령별	20대 20 (18.5)
	30대 50 (46.3)
	40대 22 (20.4)
	50대 이상 14 (12.9)
최종학력별	고등학교 15 (13.9)
	대학교 92 (85.2)
소득수준별	상위 15 (13.9)
	중간 65 (60.2)
	하위 25 (23.1)
직위별	사장/부사장 15 (13.9)
	임원(이사/감사) 9 (8.3)
	부장/과장 38 (35.2)
	대리 19 (17.6)
	일반직원 23 (21.3)
	기타 4 (3.7)
근무년수별	1년 미만 14 (13.0)
	1-10년 64 (59.3)
	11-20년 22 (20.4)
	21-30년 7 (6.5)
	30년 이상 12 (10.8)
기업 설립 년도별	1년 미만 9 (8.2)
	1-5년 13 (11.7)
	6-10년 11 (9.9)
	11-20년 30 (27.2)
	21-30년 17 (15.4)
	30년 이상 12 (10.8)

3. 한국 기업인의 부패에 대한 인식

1) 기업발전의 장애 요인

부패가 기업발전에 어느 정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정부 관료들의 뇌물요구, 정부의 관료주의,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 범죄와 절도, 법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자금조달의 어려움, 과도한 세금부과, 민간분야의 독점, 인플레이션 등을 통해 조사되었다.

(1) 한국 기업인들은 87.0%가 정부의 관료주의가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보았으며, 79.6%는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이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74.0%가 자금조달의 어려움, 73.1%가 정부관료들의 뇌물요구, 62.9%가 과도한 세금규제가 장애요인이라고 대답하였다. 법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민간분야의 독점, 인플레이션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범죄와 절도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 장애요인으로 인식되는 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표 3-2> 기업발전의 장애요인

구 분	장애요인이다	보통이다	장애요인이 아니다	무응답	응답자수 (%)
1) 정부관료들의 뇌물요구	79 (73.1)	12 (11.1)	16 (14.9)	1 (0.9)	108 (100)
2) 정부의 관료주의	94 (87.0)	5 (4.6)	9 (8.4)	0 (0.0)	108 (100)
3)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	86 (79.6)	17 (15.7)	5 (4.6)	0 (0.0)	108 (100)
4) 범죄와 절도	46 (42.6)	20 (18.5)	41 (38.0)	1 (0.9)	108 (100)
5) 법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61 (56.4)	27 (25.0)	17 (15.7)	3 (2.8)	108 (100)
6) 자금조달의 어려움	80 (74.0)	14 (13.0)	13 (12.1)	1 (0.9)	108 (100)
7) 과도한 세금규제	68 (62.9)	27 (25.0)	13 (12.1)	0 (0.0)	108 (100)
8) 민간분야의 독점	59 (54.7)	26 (24.1)	23 (21.4)	0 (0.0)	108 (100)
9) 인플레이션	56 (51.9)	34 (31.5)	17 (15.8)	1 (0.0)	108 (100)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부의 관료주의,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 정부관료들의 뇌물요구는 기업과 정부와의 관계에서 부패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러한 부분에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이 자금조달의 어려움이나 민간분야의 독점, 인플레이션 등과 같은 민간간 혹은 민간기업간에 부패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정부가 권한과 규제를 행사하는 측면이고, 기업이

규제를 받는 측면임을 알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정부가 권한과 규제를 행사하고, 기업이 정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면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것은 부패로 연결된다.

또한 기업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된 부분에 대해 거의 모든 문항에 50%이상의 응답자가 장애요인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사회의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의 장애 중 기업발전에 가장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질문에는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과 정부의 관료주의가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정부관료들의 뇌물요구도 많은 응답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과 정부의 관료주의는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3> 기업발전에 가장 중대한 장애요인

구 분	응답자수 (%)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	33 (30.6)
정부의 관료주의	32 (29.6)
자금조달의 어려움	19 (17.6)
정부관료들의 뇌물요구	12 (11.1)
과다한 세금부과	3 (2.8)
법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	2 (1.9)
인플레이션	1 (0.9)
무응답	6 (5.6)
계	108 (100.0)

(3) 기업발전의 이러한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입 중에서 몇 %를 기꺼이 할당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10% 미만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63.9%이고, 70.3% 이상의 응답자가 기업의 수입 중에서 지출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4> 기업발전의 장애요인 제거를 위해 기업의 수입 지출 의사 여부

구 분	응답자수 (%)
0 %	3 (2.8)
1-10%	69 (63.9)
11-20%	4 (3.7)
21-30%	1 (0.9)
31-40%	1 (0.9)
41-50%	1 (0.9)
50% 이상	0 (0.0)
무응답	29 (26.9)
계	108 (100.0)

2) 부패문제 분석

부패문제 분석은 기업인이 접촉하게 되는 기관들에 대한 부패인지 여부, 지난 2년간 권력형(고위층) 부패와 일선공무원 부패의 개선 여부, 공공부문과의 계약에서 뇌물의 필요 여부, 지난 2년간 비공식적 지불(접대비, 뇌물)의 증가 여부, 뇌물의 시기와 유형, 정치자금의 기부 강요 여부를 통해 조사하였다.

(1) 기업활동을 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기관들에 대한 인식에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국회, 경찰, 검찰, 군대,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부패하다는 인식이 강했고,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사법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50% 이상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 한국은행, 구청 및 동사무소, 상공회의소까지도 부패하다는 응답이 부패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많으며, 시민단체에 대해서만 부패하지 않다가 37.9%, 부패하다는 35.1%로 인식하고 있다.

<표 3-5> 기업활동을 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기관들에 대한 부패 인지

기 관 명	부패하다	보통	부패하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1) 청와대	49 (45.3)	31 (28.7)	26 (24.1)	2 (1.9)	108 (100.0)
2) 국회	77 (71.2)	5 (4.6)	23 (21.3)	3 (2.8)	108 (100.0)
3) 재정경제부	58 (53.7)	23 (21.3)	23 (21.3)	4 (3.7)	108 (100.0)
4) 행정자치부	61 (56.4)	25 (23.1)	20 (18.5)	2 (1.9)	108 (100.0)
5) 사법부	58 (53.7)	19 (17.6)	28 (25.9)	3 (2.8)	108 (100.0)
6) 검찰	71 (65.8)	18 (16.7)	19 (17.7)	0 (0.0)	108 (100.0)
7) 경찰	74 (68.5)	18 (16.7)	16 (14.8)	0 (0.0)	108 (100.0)
8) 군대	65 (60.2)	19 (17.6)	24 (22.3)	0 (0.0)	108 (100.0)
9) 한국은행	48 (44.5)	35 (32.4)	24 (22.2)	1 (0.9)	108 (100.0)
10) 종교단체	56 (51.8)	28 (25.9)	24 (22.2)	0 (0.0)	108 (100.0)
11) 시민단체	38 (35.1)	29 (26.9)	41 (37.9)	0 (0.0)	108 (100.0)
12) 언론기관	65 (60.2)	23 (21.3)	20 (18.5)	0 (0.0)	108 (100.0)
13) 구청 및 동사무소	42 (38.8)	34 (31.5)	30 (27.8)	0 (0.0)	108 (100.0)
14) 상공회의소	40 (37.0)	35 (32.4)	31 (28.7)	2 (1.9)	108 (100.0)

(2) 이들 기관 중에서 부패와 싸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회가 35.2%, 시민단체가 23.1%, 검찰이 14.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와 검찰은 부패한 기관이므로 부패와 싸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시민단체는 부패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하면서 부패와 싸우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국 기업인들은

<표 3-6> 부패와 싸우기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하는 기관

기 관 명	응답자수 (%)
국회	38 (35.2)
시민단체	25 (23.1)
검찰	16 (14.8)
청와대	6 (5.6)
사법부	4 (3.7)
재정경제부	3 (2.8)
경찰	3 (2.8)
언론기관	3 (2.8)
행정자치부	2 (1.9)
군대	1 (0.9)
구청 및 동사무소	1 (0.9)
상공회의소	1 (0.9)
무응답	5 (4.6)
계	108 (100.0)

국회와 검찰이 부패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이들 기관의 노력 여하가 한국의 부패척결에 공헌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이 기관 역할의 상대적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단체는 제시된 기관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부패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부패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시민단체에 대한 한국 기업인들의 인식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새 정부 들어서 권력형 부패와 일선공무원들의 부패가 개선되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는 질문에는 개선보다는 악화되었다는 응답이 많다. 먼저 권력형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었다가 13.1%, 악화되었다가 62.9%로 응답하였다. 일선공무원의 부패와 관련하여서는 개선되었다가 25%, 악화되었다가 49.9%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도 부패의 개선 정도는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형 부패에 비해 일선공무원 부패의 악화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7> 지난 2년간 부패의 개선 정도

구분	매우 악화	대체로 악화	조금 악화	변함 없음	조금 개선	대체로 개선	매우 개선	무응답	응답자수 (%)
권력형 부패	20 (18.5)	23 (21.3)	25 (23.1)	25 (23.1)	10 (9.3)	2 (1.9)	2 (1.9)	1 (0.9)	108 (100.0)
일선공무원 부패	9 (8.3)	20 (18.5)	25 (23.1)	27 (25.0)	21 (19.4)	6 (5.6)	0 (0.0)	0 (0.0)	108 (100.0)

(4) 공공부문과의 계약에 뇌물이 필요한가의 여부에는 필요 없다는 25.0%, 필요하다는 55.5%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표 3-8> 공공부문과의 계약시 뇌물의 필요 여부

전혀 필요없음	대체로 필요없음	가끔 필요없음	보통이다	가끔 필요	대체로 필요	항상 필요	무응답	응답자수 (%)
7 (6.5)	11 (10.2)	9 (8.3)	19 (17.6)	25 (23.1)	19 (17.6)	16 (14.8)	2 (1.9)	108 (100.0)

(5) 정부와의 계약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불공정한 경쟁 때문이라고 응답하여 정부와의 계약에 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선불지급이나 행정비용과 같은 절차에 드는 비용이 과다하고, 필요한 서류가 과다한 것도 정부와의 계약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표 3-9> 정부와의 계약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구 분	응답자수 (%)
불공정한 경쟁	27 (25.0)
절차에 드는 비용(선불지급과 행정비용) 과다	19 (17.6)
필요한 서류의 과다	15 (13.9)
접대비나 강요된 뇌물	9 (8.3)
우리회사와 관계 없음	35 (32.4)
무응답	3 (2.8)
계	108 (100.0)

(6) 지난 2년간 접대비나 뇌물과 같은 비공식적 지불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38.9%, 감소했다는 응답이 19.5%이다. 이 부분 역시 본 연구에서는 지난 2년간 부패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여타 설문과 그 흐름이 일치하고 있어 한국 기업인들은 국민의 정부 들어서 부패수준이 개선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지난 2년간 비공식적 지불(접대비, 뇌물)의 비율

훨씬 감소	대체로 감소	약간 감소	변함 없음	약간 증가	대체로 증가	훨씬 증가	무응답	응답자수 (%)
5 (4.6)	2 (1.9)	14 (13.0)	43 (39.8)	27 (25.0)	11 (10.2)	4 (3.7)	2 (1.9)	108 (100.0)

(7) 언제 뇌물을 지불하고, 무엇이 뇌물을 지불하도록 만드느냐는 질문에는 공무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다가 37.0%로 가장 많았고, 뇌물의 유형과 금액이 사전에 알려져 있다는 응답이 33.3%,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는 응답이 23.1%로 나타났다.

<표 3-11> 뇌물 제공의 시기와 유형

구 분	응답자수 (%)
공무원들이 먼저 뇌물을 요구한다	40 (37.0)
뇌물의 유형과 금액이 사전에 알려져 있다	36 (33.3)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한다	25 (23.1)
무응답	7 (6.5)
계	108 (100.0)

(8) 지난 2년간, 그리고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 정치 자금에의 기부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냐는 응답에는 59.3%가 없다, 26.9%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치 자금에의 기부 강요 경험에는 반수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표 3-12> 정치자금의 기부 강요 경험

구 분	있다	없다	무응답	응답자수 (%)
지난 2년간	29 (26.9)	64 (59.3)	15 (13.9)	108 (100.0)
지난 선거운동 기간	25 (23.1)	60 (55.5)	23 (21.3)	108 (100.0)

3) 한국사회의 투명성

한국사회의 투명성에 대하여는 정부규제나 정책 시행의 영향 여부,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 시 기업의견 고려 여부와 예측가능 여부,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여부와 평가 기준 및 결과의 공표 여부를 통해 조사하였다.

(1) 정부규제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46.3%로, 28.7%인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많다. 이것은 기업들이 정부규제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표 3-13> 정부규제나 정책 시행의 영향 여부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정부규제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디인지 알 수 있다	50 (46.3)	26 (24.1)	31 (28.7)	1 (0.9)	108 (100.0)

(2) 법 개정 또는 정책변경시 정부가 기업협회나 개별기업의 의견을 고려하느냐의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58.4%로, 그렇다라는 의견인 15.7%보다 월등히 많아 정부정책의 변경이 기업과 상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횡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규제나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민감한 기업에 대해 정부는 기업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법 개정이나 정책을 변경함으로써 기업의 불만을 야기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게 된다.

<표 3-14>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시 기업의견 고려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법 개정 또는 정책변경시 정부는 기업협회 또는 개별기업의 의견을 고려한다	17 (15.7)	28 (25.9)	63 (58.4)	0 (0.0)	108 (100.0)

(3)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느냐는 응답에도 그렇다라는 응답이 54.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인 20.4%보다 훨씬 많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2>와 <표 3-3>을 통해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이 기업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법이나 정책 변경시 기업의 의견을 고려한 예측가능의 여부가 기업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5> 법이나 정책 변경의 예측가능 여부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실질적으로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이나 정책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한다	59 (54.6)	27 (25.0)	22 (20.4)	0 (0.0)	108 (100.0)

(4)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이냐에 대한 질문에는 대다수의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어 여전히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에는 불신이 팽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한 정보의 제공 여부가 기업의 불만과 정부에의 불신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임을 알 수 있다.

<표 3-16>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 여부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효율적으로 알려진다	7 (6.6)	21 (19.4)	78 (72.2)	2 (1.9)	108 (100.0)

(5)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결과가 공표되는냐의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4.6%로 그렇다라는 응답인 16.7%보다 월등히 많다. 따라서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투명한 사회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17>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평가기준과 결과의 공표 여부

구 분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수 (%)
정부와의 계약에 대한 평가기준과 그 결과는 공표된다	18 (16.7)	28 (25.9)	59 (54.6)	3 (2.8)	108 (100.0)

한국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질문에는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이 많다. 정부정책의 변경이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며, 이러한 변경에 기업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의 계약에 대해서도 정보가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으며 결과의 공표도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변경에 영향을 받는 기업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어, 기업의 관심은 크지만 참여방법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 관료제 비용

관료제 비용은 기업인이 관료와 협상하기 위하여 들인 시간, 지난 2년간 이러한 시간의 증감여부,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었던 행정기관 여부로 조사하였다.

(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인이 관료와 협상하기 위하여 들인 시간은 한달에 2.82일 정도이다.

<표 3-18> 관료와의 협상에 사용되는 시간(한달 평균)

구 분	응답자수 (%)	평 균 (일)
1-2일	18 (16.7)	2.82
3-4일	10 (9.2)	
5-6일	10 (9.2)	
7-10일	14 (13.0)	
11-15일	1 (0.9)	
16일 이상	1 (0.9)	
무응답	53 (49.1)	
계	108 (100.0)	

(2) 지난 2년간 기업인이 관료와 협상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23.2%로 증가하였다는 응답 15.8%보다 많이 나타났다. 그러나 전과 동일하다는 응답도 43.5%를 차지하고 있다. 기업인이 관료와 협상하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거나 직접 대면하고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부패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되는 것을 생각하면 관료와의 협상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바람직하게 생각된다.

<표 3-19> 지난 2년간 관료와의 협상에 사용된 시간

감소했다	전과 동일	증가했다	무응답	응답자수 (%)
25 (23.2)	47 (43.5)	17 (15.8)	19 (17.6)	108 (100.0)

(3) 가장 많이 시간을 소비하게 만들었던 행정기관으로는 구청, 세무서, 시청, 경찰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법원, 금융감독원, 세관, 행자부, 재경부, 공사 등이 거론되었다.

5) 부패라운드에 대한 내용 인지 및 대처방법

부패라운드에 대한 내용 인지 및 대처방법에 대하여는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에의 인지 여부, 이 협약의 이행입법으로 제정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

의 인지 여부, 부패라운드의 기업에의 영향 여부, 한국 기업의 협약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조사하였다.

(1) 1999년 2월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의 발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인인 63%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22.2%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3-20>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에의 인지 여부

구 분	잘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알고있다	응답자수 (%)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에 대해 선생님의 기업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68 (63.0)	16 (14.8)	24 (22.2)	108 (100.0)

(2) 부패라운드가 기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것이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과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비슷하다.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에 많은 수가 답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표 3-21> 부패라운드의 기업에의 영향 여부

구 분	영향 없음	보통이다	영향 있음	응답자수 (%)
부패라운드가 선생님의 기업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35 (32.4)	35 (32.4)	38 (35.2)	108 (100.0)

(3)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정부가 이행입법으로 제정한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 대한뇌물방지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냐는 질문에 47.3%가 알지 못한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26.9% 정도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표 3-22> 협약의 이행입법에의 인지 여부

구 분	잘 모른다	보통이다	잘 알고있다	응답자수 (%)
부패라운드에 대비하여 정부가 이행입법으로 제정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방지법」에 대해 선생님의 기업은 어느정도 알고 있는가	51 (47.3)	27 (25.0)	29 (26.9)	108 (100.0)

(4) 응답자가 속한 기업이 이 협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른다가 44.4%로 가장 많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31.5% 이다. 실천계획을 시행했거나, 시행중, 검토중에 있는 기업은 20.4% 이다.

<표 3-23>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에의 대처 상황

선생님의 기업은 이 협약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응답자수 (%)
실천계획을 검토중에 있다	10 (9.3)
실천계획을 시행중 혹은 시행했다	12 (11.1)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34 (31.5)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른다	48 (44.4)
무응답	4 (3.7)
계	108 (100.0)

한국 기업인들은 OECD의 해외부패방지협약에 대해 대체로 잘 모르고 있으며, 이 협약의 이행입법인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역시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패방지협약에 대처하여 실천계획을 검토중에 있거나 시행중 혹은 시행한 기업인은 20.1%에 불과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거나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응답한 경우가 75.9%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부패방지협약이나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에 대한 홍보 및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

6) 부패문화유형

사회를 보는 일반적인 인식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인의 부패문화를 알아보았다. 기업의 부패문화는 크게 4가지 국면에서 조사하였다. 첫째는 권력과 정치인 관계 부패문화 유형으로 기업인이 권력과 정치인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다. 둘째는 행정기관, 관료 관계 부패문화 유형, 셋째는 민간기업간 또는 개인의 부패문화 유형, 넷째는 해외 부패문화 유형이다.

한국 기업인의 부패 인지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패문화를 분석하는 것은 부패가 문화 조건적 행위(culturally conditioned behavior)이기 때문이다. 부패는 부정확한 문화적 관행과 의식을 토양으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문화의 근절 또는 해소 없이 통제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박홍식, 1999).

(1) 권력과 정치인 관계 부패문화 유형

<표 3-24> 권력과 정치인 관계 부패문화 유형

구 분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
권력과 친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은 성공하기 어렵다	26 (24.1)	40 (37.0)	21 (19.4)	14 (13.0)	4 (3.7)	2 (1.9)	1 (0.9)	108 (100.0)
권력은 법보다 앞선다	40 (37.0)	37 (34.3)	17 (15.7)	5 (4.6)	4 (3.7)	3 (2.8)	2 (1.9)	108 (100.0)
권력에 밍보이면 불이익을 당한다	39 (36.1)	44 (40.7)	15 (13.9)	5 (4.6)	3 (2.8)	2 (1.9)	0 (0.0)	108 (100.0)
정치인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투자이다	20 (18.5)	26 (24.1)	19 (17.6)	14 (13.0)	11 (10.2)	8 (7.4)	10 (9.3)	108 (100.0)

권력과 정치인 관계에 있어서는 여타 다른 분야보다 훨씬 심각한 부패를 야기하는 의식이 기업인들에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권력과 친하지 않고는 기업활동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80.5%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 6.5%에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인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권력지향적이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게 된다.

다음으로 권력이 법보다 앞선다라는 응답에 87%가 동의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8.4%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식 역시 법보다는 비공식적인 절차와 지불에 의존하게 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부패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권력에 밍보이면 불이익을 당한다는 질문에 90.7%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7%만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인들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기업 운영에 몰두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게 하며, 소신 있게 행동하기보다는 권력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려 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정치인들에게 기부금을 내는 것은 일종의 투자라고 생각하는 응답이 60.2%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6.9%이다. 이러한 의식은 기술이나 인력 개발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정치인에 투자를 하게 함으로서 건전한 기업운영과 발전을 저해하게 된다.

(2) 행정기관, 관료 관계 부패문화 유형

<표 3-25> 행정기관, 관료 관계 부패문화 유형

구 분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
정부와의 일처리에 있어 뇌물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	11 (10.2)	29 (26.9)	33 (30.6)	15 (13.9)	11 (10.2)	5 (4.6)	4 (3.7)	108 (100.0)
공무원에 금품제공이나 접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3 (12.0)	24 (22.2)	33 (30.6)	18 (16.7)	10 (9.3)	7 (6.5)	3 (2.8)	108 (100.0)

행정기관, 관료 관계에 있어서 역시 부정적이며 불신과 부패가 팽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와의 일처리에 있어 뇌물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는 응답이 67.7%, 그렇지 않다는 18.5%로 나타나 뇌물이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있으며 뇌물을 통한 반대급부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에 금품제공이나 접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응답에는 64.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1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3) 민간기업간 또는 개인의 부패문화 유형

<표 3-26> 민간기업간 또는 개인의 부패문화 유형

구 분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수 (%)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다	3 (2.8)	4 (3.7)	14 (13.0)	22 (20.4)	18 (16.7)	22 (20.4)	24 (22.2)	1 (0.9)	108 (100.0)
나는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27 (25.0)	25 (23.1)	20 (18.5)	24 (22.2)	4 (3.7)	8 (7.4)	0 (0.0)	0 (0.0)	108 (100.0)
법률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이다	9 (8.3)	19 (17.6)	27 (25.0)	25 (23.1)	13 (12.0)	11 (10.2)	4 (3.7)	0 (0.0)	108 (100.0)

민간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인식에 있어 먼저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다 에는 19.5%가, 그렇지 않다 에는 59.3%가 응답하고 있어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식은 사라지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형태로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정부를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66.6%가 그렇지 않다, 11.1%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어 한국 기업인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정부는 기업인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신뢰(Public Trust)를 회복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을 지키면 자기만 손해라는 응답에는 50.9%가 그렇다, 25.9%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역시 사회전반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4) 해외 부패문화 유형

해외에서 한국 기업이 처신하는 방법을 알 수 있는 질문을 통해 해외 부패문화에 대해 살펴 보았다. 먼저 해외공사의 낙찰을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뇌물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묵인된다는 응답은 58.3%,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7.5%이다. 이러한 응답은 외국 정부나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 국가가 처벌해야 하는 OECD 해외부패방지협약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표 3-27> 해외 부패문화 유형

구 분	전적으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무응답	응답자 수 (%)
해외공사의 낙찰을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뇌물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묵인된다	7 (6.5)	24 (22.2)	32 (29.6)	31 (28.7)	4 (3.7)	2 (1.9)	2 (1.9)	6 (5.6)	108 (100.0)
국익을 위해서는 뇌물정도는 상관없다	3 (2.8)	8 (7.4)	13 (12.0)	28 (25.9)	18 (16.7)	13 (12.0)	23 (21.3)	2 (1.9)	108 (100.0)

국익을 위해서는 뇌물정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22.2%이고,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50.0%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해외공사의 낙찰을 위해 뇌물이 묵인된다는 응답과는 상반되고 있는데, 개인보다는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하다는 것과 일반적인 사회 관행과 개인이 추구하는 사회전반에의 청렴성 사이의 괴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우리나라에서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국민의 의식교육(36.1%)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32.4%),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23.1%)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 보수의 인상과 시민

단체의 역할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 척결을 위해 부패가 관행적으로 익숙해져 있는 국민들의 의식 개혁을 위한 교육, 정부와 대통령,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 3-28> 부패척결에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

구 분	응답자수 (%)
국민의 의식교육	39 (36.1)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35 (32.4)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	25 (23.1)
공무원 보수의 인상	7 (6.5)
시민단체의 역할	2 (1.9)
계	108 (100.0)

4. 한국 기업인의 부패 특성

첫째, 한국 기업인들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정부와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동시에 정부와의 일처리에 있어 뇌물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특히 정책의 예측불가능과 정부의 관료주의는 기업발전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나타남으로서 기업이 정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이에 따라 공무원에게 뇌물 제공의 가능성이 발생하고, 공무원에 금품제공이나 접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

둘째, 기업활동을 하면서 접촉하게 되는 기관들 중에서 국회와 경찰, 검찰이 부패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언론기관, 행자부, 재경부 등 행정기관, 사법부,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부패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사회에 부패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한국 기업인들이 뇌물을 제공하는 시기와 유형은 공무원들이 년지시 뇌물을 요구하거나 뇌물의 유형과 금액이 사전에 알려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만한 관계유지나 업무처리를 위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는 부분도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목표만 달성할 수 있으면 어떠한 방법도 상관없다라는 응답에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여 뇌물 제공에 있어 개인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보인다.

넷째, 한국 사회의 투명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법 개정이나 정책 변경시에 기업의 의견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의 계약에 있어 정보가 투명하게 알려지지 않으며, 그 결과와 평가기준 역시 공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들어 기업인이 관료와 협상하기 위하여 사용한 시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라운드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으며, 부패라운드가 기업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으며, 부패라운드에 대처하고 있는 기

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해외공사의 낙찰을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뇌물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묵인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앞에서 살펴본 OECD 부패방지협약의 시행에 커다란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부패척결을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국민의 의식교육과 정부의 부패척결 노력, 대통령과 정치권의 의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법이나 제도의 변경 보다는 의식과 문화의 변화를 통해 부패가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한국 기업인들의 부패척결 의식이 한층 성숙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IV. 부패라운드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향

1. 부패방지협약에 대한 인식 제고

부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부패라운드라는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는 시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인들은 부패방지협약이나 그 후속조치들에 대해 거의 인식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이 자칫하면 국제 무역에 있어서 커다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부패방지협약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저촉 당하지 않는 조치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부패방지협약과 관련된 국내 부패 관련법의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부패방지협약은 기능적 동등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될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방지법의 내용이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수정이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부패방지협약의 관할권은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개발도상국들에서는 속인주의가, 미국과 같은 경우 뇌물을 제공한 기업인이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속지주의와 속인주의의 동시 적용에 따라 미국 정부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과의 무역에 있어서 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고 뇌물을 제공하거나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부패한 행위를 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셋째, 공무원에 대한 모든 뇌물 공여는 자금세탁법의 위법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형벌이 엄해질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있어서 불법자금의 의무적 보고 등이 수반되고 기업의 책임도 엄중해질 수 있다. 또한 그 내용에 따라 회계기준과 내부통제를 포함한 상법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행이나 원만한 관계 유지, 업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뇌물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가 기업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이 아직 자금세탁법을 제정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협약을 비준한 국가 중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자금세탁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OECD의 협약이행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감안하면 자금세탁법의 제정은

임박해 있다고 볼 수 있다. 후속조치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차원에서 이에 대한 법의 제정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

2. 한국 기업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 제고

부패라운드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외에도 한국 기업의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 첫째로는 기업회계 및 감사기준, 기업내부통제 등의 제도 개선이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부패방지협약의 이행 차원에서도 필요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다. 이 외에도 유령회사나 비자금(slush fund)의 설립금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교육 강화의 조치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기업윤리강령의 적극적 채택이다. 기업윤리강령은 기업의 이미지 향상과 함께 민·형사상의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기업의 부패척결을 위한 노력을 대외적으로 주지시키고 일상 업무에서의 관리체계 등 부패 방지를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천명할 수 있는 도구이다. 우리나라 30대 기업 가운데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1/3에도 못 미치고 있다. 그나마 '제정'은 해 놓았으나 이미 사문화 되어 버린 윤리강령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실천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여 실질적 윤리경영으로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반부패국민연대, 2000). 기업 컨설팅 그룹인 CRG(Control Risks Group)가 미국과 유럽기업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기업의 96%, 유럽 기업의 70%가 윤리강령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새로운 기업문화의 도입이다. 한국 기업인의 부패 인지도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아직도 대부분의 기업인들이 해외공사의 낙찰을 위해 외국 정부에 대한 뇌물은 정부로부터 어느 정도 묵인된다(그렇다: 58.3%, 아니다: 7.5%)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권력이 법보다 앞선다(그렇다: 87%, 아니다: 8.4%), 정부와의 일처리에 있어 뇌물이면 안 통하는 것이 없다(그렇다: 67.7%, 아니다: 18.5%)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이 팽배하면 기업이 소신있게 행동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권력을 통해 이익을 획득하려 하게 되어 부패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그러나 부패라운드의 시대에는 이러한 기업문화로서는 기업은 물론 국가 자체도 존립이 어려워지게 된다. 우리는 이미 부패가 그 한 원인이 된 IMF라는 국가 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다. 또한 각종 조사에서 특정한 국가의 부패지수가 높아져 부패해지면 투자액이 줄어드는 실증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물론 문화의 변화가 쉬운 일은 아니며, 인위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그러나 법이나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일을 처리하기보다 손쉽게 접대비를 제공하려 하거나, 불법부당한 행위를 뇌물로 무마하려는 행태는 기업인들 스스로가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닐 수 없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패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의 변화가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고 한국 기업의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이와 아울러 한국 기업인의 부패인지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을 점검하고 기업부문에서의 부패척결노력도 제시해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간과될 수 없는 것이 정부의 반부패 의지이다. 정부는 부패방지법과 자금세탁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부패라운드에 대비해야 한다. 동시에 기업들에게 적절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한국 기업들이 국제 무역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전한 정부운영으로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년 지시 뇌물을 요구하는 뇌물 교사(solicitation)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공무원 윤리강령 마련과 보수체제의 현실화, 법이나 정부정책의 변경시에 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가 공개 되는 투명한 정책결정과정의 확립, 바람직한 공무수행을 촉진하는 경영기법의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박홍식, 1999, “부패지향적 기업문화의 해소 방안”, 한국행정학회 특별세미나 발표논문
집.
- 반부패국민연대, 2000, 《기업윤리시스템의 필요성과 구축방안》.
- 법무부·진국경제인연합회, 1999, 《문답식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해설》.
- 부정방지대책위원회, 1996, 《기업의 관(官)에 대한 여론조사》.
- 장근호, 1997, “경제성장과 정부운영에 관한 일고: 제도적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공
공경제학회 제1차 학술대회.
- 조은경, 2000, “한국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뉴스레터 2000. 10월호.
- 참여연대, 2000, 《부정부패의 경제적 비용: 아시아, 경제위기와 부패》, 동아시아 3개
국 전문가 초청 국제 토론회.
- 한국경제연구원, 1999, “한국경제, 미래는 있는가? -성장의 한계와 새로운 가능성 -”,
창립 18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발전 연구센터.
- Experimental case studies on transparency practices, IMF, 1999.
- Hellman et al., “Measuring Governance, Corruption, and State Capture: How Firms and
Bureaucrats Shape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ransition Econom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312, World Bank, 2000
- Johann Graf Lambsdorff, “First Inquiry into the Bribery Propensity of Leading Exporting
Nations”, TI, 1997.
- Kaufmann, Daniel and Wei, Shang-Jin, “Does “Grease Money” Speed Up the Wheels of
Commerce?”, NBER, NBER Working Paper No. 7093, April 1999.
- OECD Public Management Committee, “Principle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ctor
and 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Public Service”, 1999
- Tanzi. Vito, “Corruption Around World: Causes, Consequences, Scope and Cures,”
IMF, IMF Staff Paper Vol. 45, No. 4, 1998.
- Countering Public Sector Corruption: An overview of corruption prevention measur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c Management Service, 1999.
- DAFFE/CFA/WP8(98)12/REV1.
- DAFFE/CFA/WP8(98)12, 1998.

DAFFE/CFA(99)32.

DAFFE/IME/BR/WD(2000)23/PART1 and 2.

DAFFE/IME/BR/WD(99)16.

DAFFE/IME/BR/WD(99)15.

DAFFE/BR(99)10.

DAFFE/IME/BR/WD(2000)10, "Report of the FATF on Non-Cooperative Countries and Territories", 2000.

DAFFE/IME/RD(2000)1, Kathryn Gorden and Maiko Miyake, "Bribery and Codes of Corporate Conduct: Business Approaches to Commitment and Implementation" , 1999.